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818호 2011. 2. 22(화)

◀ 규 칙 ▶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543호) 2
-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의회규칙 제18호) 16
- 포항시의회 의원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회규칙 제19호) 17

◀ 고 시 ▶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2011-11호)..... 25

◀ 공 고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공람공고(제2011-131호)..... 26

회 람									
--------	--	--	--	--	--	--	--	--	--

규 칙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2월 22일

포항시 규칙 제 543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제협력 총괄계획 수립
3. 국제단체 지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 및 외빈방문에 따른 의전, 통·번역
5. 인터넷전자무역중소기업 홍보 지원
6. 국제도시 및 민간단체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업무 지원 및 조정

- 8. 국외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사항
- 9.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
- 10. 일본, 중국 등 환동해권 관광객유치 및 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 11. 수출, 무역상담, 해외시장 개척 등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해양항만팀) 해양항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양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항만개발 정책수립 및 추진
- 3. 항만개발 사업 지원
- 4. 항만관련 SOC사업 개발 및 지원
- 5. 영일만항 개발 및 운영지원
- 6. 포항항(영일만항, 신항, 구항) 관련업무 지원
- 7. 항만물류 활성화 및 지원
- 8. 항만물동량 유치 및 지원
- 9.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해양항만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2.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및 비전수립
- 3. 시정 주요업무계획 작성·관리
- 4. 주요정책 개발 및 관리
- 5. 전국(경북)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 6. 동해권 행정협의회 운영
- 7.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에 관한 사항
- 8.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
-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 1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 11. 경영수익사업 총괄
- 1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13.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14. 시의회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15. 의회 부의안건(조례제외) 관리
- 16.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조례 제외)
- 17. 시정의 종합평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18. 성과관리(BSC)에 관한 사항
- 19. 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관리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체육지원과)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2. 각종 체육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3.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지도·감독
- 4. 시민체전 및 체육활성화
- 5. 체육시설업 등록 및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6.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관리
- 7.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8. 해양레포츠 시설 및 해양스포츠에 관한 사항
- 9. 프로축구 활성화
- 10. 체육시설물 설치, 관리 및 운영
- 11. 각종 경기장(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2. 경기장 사용허가 및 관리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경제노동과) 경제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2.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3. 소상공인 및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지도
- 4.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 5.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사항
- 6. 소비자보호대책,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사항
- 7. 통신 및 방문판매에 관한 사항
- 8. 계량기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 9. 부정경쟁방지단속
- 10. 노동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11. 노사지원 및 근로복지에 관한 사항
- 12. 재래시장 및 상가지원에 관한 사항
- 13. 상설시장 운영·지도, 상가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 14. 상인조직 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15. 희망근로 등 경제노동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2.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
- 3. 포스코·철강산업단지·농공단지 등 협력 및 지원
- 4.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기술품질 향상 지원
-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관리, 공산품 단속
- 6.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
- 7. 기업민원 one-stop 처리제 운영
- 8.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총괄
- 9.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
- 10. 투자정보 분석, 유치단 파견 및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 11.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관리
- 12.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홈페이지 관리
- 13.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14. 국내외 자본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 15.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 16.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17.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 관리 및 지원
- 18. 민자유치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9.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20. 외국인 투자지역 및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추진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노인복지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 2. 노인복지법인·시설관리, 노인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3. 독거노인 지원 및 노인일자리 시책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 4.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 5. 저출산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출산장려정책 수립 및 범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 7. 복지시설(보육, 장애인, 노인, 여성, 부랑인 등)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총괄
-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 9.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지원
- 10. 장사문화 분야 업무 총괄 및 조정
- 11. 시립 화장장 운영관리
- 12.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 13. 보훈관련 시설물 관리
- 14. 삼일절, 현충일 등 추념행사 추진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여성정책 계획수립 및 종합기획
- 2. 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
- 3.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 4. 양성평등 사업 및 교육
- 5. 여성단체 지도 및 교육
- 6. 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 7.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 8. 국·공립·법인보육시설 관리
- 9. 민간·개인보육시설 인·허가 관리
- 10. 건강가정 시책개발 및 추진
- 11. 여성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
- 12.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
- 1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4.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 15. 일본군 피해 할머니 보호 및 지원
- 16. 아동·청소년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 17. 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 18. 아동보육시설 인가 및 감독
- 19. 학교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20.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관리

- 21.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 22.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3.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별표 2의 제목 중 “제45조” 를 “제46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화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7조(국제협력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u> 2. <u>국제협력 총괄계획 수립</u> 3. <u>국제단체 지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4. <u>국제행사 및 외빈방문에 따른 의전, 통·번역</u> 5. <u>인터넷전자무역중소기업 홍보 지원</u> 6. <u>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에 관한 사항</u> 7. <u>국제도시 및 민간단체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u> 8. <u>국제교류업무 지원 및 조정</u> 9. <u>국외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사항</u> 10. <u>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u> 11. <u>일본, 중국 등 환동해권 관광객 유치 및 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u> 12. <u>수출, 무역상담, 해외시장 개척 등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u> 13. <u>그 밖에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u> <p>제9조(해양항만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해양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2. <u>해양레포츠 시설 및 해양스포츠에 관한 사항</u> 	<p>제7조(국제협력팀)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u> 2. <u>국제협력 총괄계획 수립</u> 3. <u>국제단체 지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4. <u>국제행사 및 외빈방문에 따른 의전, 통·번역</u> 5. <u>인터넷전자무역중소기업 홍보 지원</u> 6. <u>국제도시 및 민간단체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u> 7. <u>국제교류업무 지원 및 조정</u> 8. <u>국외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사항</u> 9. <u>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u> 10. <u>일본, 중국 등 환동해권 관광객 유치 및 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u> 11. <u>수출, 무역상담, 해외시장 개척 등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u> 12. <u>그 밖에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u> <p>제9조(해양항만팀)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해양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2. <u>항만개발 정책수립 및 추진</u>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항만개발 정책수립 및 추진 4. 항만개발 사업 지원 5. 항만관련 SOC사업 개발 및 지원 6. 영일만항 개발 및 운영지원 7. 포항항(영일만항, 신항, 구항) 관련 업무 지원 8. 항만물류 활성화 및 지원 9. 항만물동량 유치 및 지원 10.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양항만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항만개발 사업 지원 4. 항만관련 SOC사업 개발 및 지원 5. 영일만항 개발 및 운영지원 6. 포항항(영일만항, 신항, 구항) 관련 업무 지원 7. 항만물류 활성화 및 지원 8. 항만물동량 유치 및 지원 9.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항만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p>제14조(기획예산과)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및 비전수립 3. 시정 주요업무계획 작성·관리 4. 주요정책 개발 및 관리 5. 전국(경북)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6. 동해권 행정협의회 운영 7.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9.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10. 경영수익사업 총괄 1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13. 시의회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p>제14조(기획예산과)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및 비전수립 3. 시정 주요업무계획 작성·관리 4. 주요정책 개발 및 관리 5. 전국(경북)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6. 동해권 행정협의회 운영 7.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에 관한 사항 8.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1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11. 경영수익사업 총괄 1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p>14. <u>의회 부의안건(조례제외) 관리</u></p> <p>15. <u>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조례 제외)</u></p> <p>16. <u>시정의 종합평가 및 확인에 관한 사항</u></p> <p>19. <u>성과관리(BSC)에 관한 사항</u></p> <p>20. <u>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관리</u></p> <p>제18조(체육지원과) (생 략)</p> <p>1. <u>체육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u></p> <p>2. <u>각종 체육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u></p> <p>3. <u>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지도·감독</u></p> <p>4. <u>시민체전 및 체육활성화</u></p> <p>5. <u>체육시설업 등록 및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u></p> <p>6. <u>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관리</u></p> <p>7. <u>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u></p> <p>8. <u>프로축구 활성화</u></p> <p>9. <u>체육시설물 설치, 관리 및 운영</u></p> <p>10. <u>각종 경기장(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u></p> <p>11. <u>경기장 사용허가 및 관리</u></p>	<p>14. <u>시의회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u></p> <p>15. <u>의회 부의안건(조례제외) 관리</u></p> <p>16. <u>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조례 제외)</u></p> <p>17. <u>시정의 종합평가 및 확인에 관한 사항</u></p> <p>18. <u>성과관리(BSC)에 관한 사항</u></p> <p>19. <u>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관리</u></p> <p>제18조(체육지원과) (현행과 같음)</p> <p>1. <u>체육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u></p> <p>2. <u>각종 체육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u></p> <p>3. <u>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지도·감독</u></p> <p>4. <u>시민체전 및 체육활성화</u></p> <p>5. <u>체육시설업 등록 및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u></p> <p>6. <u>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관리</u></p> <p>7. <u>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u></p> <p>8. <u>해양레포츠 시설 및 해양스포츠에 관한 사항</u></p> <p>9. <u>프로축구 활성화</u></p> <p>10. <u>체육시설물 설치, 관리 및 운영</u></p> <p>11. <u>각종 경기장(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등) 관리</u></p>

현 행	개 정
<p>제21조(경제노동과)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및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지도 4.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5.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대책,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사항 7. 통신 및 방문판매에 관한 사항 8. 계량기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9.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관리, 부정경쟁방지단속, 공산품 단속 10. 노동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1. 노사지원 및 근로복지에 관한 사항 12. 재래시장 및 상가지원에 관한 사항 13. 상설시장 운영·지도, 상가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14. 상인조직 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15. 희망근로 등 경제노동업무에 관한 사항 <p>제22조(기업유치과)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에 관한 사항</p> <p>12. 경기장 사용허가 및 관리</p> <p>제21조(경제노동과)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및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지도 4.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5.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대책,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사항 7. 통신 및 방문판매에 관한 사항 8. 계량기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9. 부정경쟁방지단속 10. 노동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1. 노사지원 및 근로복지에 관한 사항 12. 재래시장 및 상가지원에 관한 사항 13. 상설시장 운영·지도, 상가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14. 상인조직 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15. 희망근로 등 경제노동업무에 관한 사항 <p>제22조(기업유치과)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현행	개정
<p>2.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p> <p>3. 포스코·철강산업단지·농공단지 등 협력 및 지원</p> <p>4.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기술품질 향상 지원</p> <p>5.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p> <p>6. 기업민원 one-stop 처리제 운영</p> <p>7.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총괄</p> <p>8.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p> <p>9. 투자정보 분석, 유치단 파견 및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p> <p>10.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관리</p> <p>11.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홈페이지 관리</p> <p>12.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p> <p>13. 국내외 자본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p> <p>14.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p> <p>15.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p> <p>16.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 관리 및 지원</p> <p>17. 민자유치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p> <p>18.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p> <p>19. 외국인 투자지역 및 국내기업투</p>	<p>2.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p> <p>3. 포스코·철강산업단지·농공단지 등 협력 및 지원</p> <p>4.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기술품질 향상 지원</p> <p>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관리, 공산품 단속</p> <p>6.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p> <p>7. 기업민원 one-stop 처리제 운영</p> <p>8.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총괄</p> <p>9.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p> <p>10. 투자정보 분석, 유치단 파견 및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p> <p>11.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관리</p> <p>12.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홈페이지 관리</p> <p>13.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p> <p>14. 국내외 자본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p> <p>15.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p> <p>16.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p> <p>17.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 관리 및 지원</p> <p>18. 민자유치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p> <p>19.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u>자 촉진지구 지정 추진</u></p> <p>제29조(저출산고령화대책과)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노인복지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u> 2. <u>노인복지법인·시설관리, 노인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u> 3. <u>독거노인 지원 및 노인일자리 시책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u> 4. <u>일본군 피해 할머니 보호 및 지원</u> 5. <u>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u> 6. <u>저출산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출산장려정책 수립 및 범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u> 8. <u>복지시설(보육, 장애인, 노인, 여성, 부랑인 등)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총괄</u> 9. <u>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u> 10. <u>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지원</u> 11. <u>장사문화 분야 업무 총괄 및 조정</u> 12. <u>시립 화장장 운영관리</u> 13. <u>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u> 14. <u>보훈관련 시설물 관리</u> 15. <u>삼일절, 현충일 등 추념행사 추진</u> <p>제30조(여성가족과)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여성정책 계획수립 및 종합기획</u> 	<p style="text-align: center;"><u>자 촉진지구 지정 추진</u></p> <p>제29조(저출산고령화대책과)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노인복지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u> 2. <u>노인복지법인·시설관리, 노인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u> 3. <u>독거노인 지원 및 노인일자리 시책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u> 4. <u>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u> 5. <u>저출산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6. <u>출산장려정책 수립 및 범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u> 7. <u>복지시설(보육, 장애인, 노인, 여성, 부랑인 등)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총괄</u> 8. <u>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u> 9. <u>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지원</u> 10. <u>장사문화 분야 업무 총괄 및 조정</u> 11. <u>시립 화장장 운영관리</u> 12. <u>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u> 13. <u>보훈관련 시설물 관리</u> 14. <u>삼일절, 현충일 등 추념행사 추진</u> <p>제30조(여성가족과)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여성정책 계획수립 및 종합기획</u>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u>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u> 3. <u>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u> 4. <u>양성평등 사업 및 교육</u> 5. <u>여성단체 지도 및 교육</u> 6. <u>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u> 7. <u>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u> 8. <u>국·공립·법인보육시설 관리</u> 9. <u>민간·개인보육시설 인·허가 관리</u> 10. <u>건강가정 시책개발 및 추진</u> 11. <u>여성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u> 12. <u>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u> 13. <u>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u> 14. <u>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u> 15. <u>아동·청소년육성 종합계획의 수립</u> 16. <u>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u> 17. <u>아동보육시설 인가 및 감독</u> 18. <u>학교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u> 19. <u>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관리</u> 20. <u>구룡포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u> 21. <u>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2. <u>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u>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u> 3. <u>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u> 4. <u>양성평등 사업 및 교육</u> 5. <u>여성단체 지도 및 교육</u> 6. <u>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u> 7. <u>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u> 8. <u>국·공립·법인보육시설 관리</u> 9. <u>민간·개인보육시설 인·허가 관리</u> 10. <u>건강가정 시책개발 및 추진</u> 11. <u>여성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u> 12. <u>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u> 13. <u>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u> 14. <u>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u> 15. <u>일본군 피해 할머니 보호 및 지원</u> 16. <u>아동·청소년육성 종합계획의 수립</u> 17. <u>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u> 18. <u>아동보육시설 인가 및 감독</u> 19. <u>학교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u> 20. <u>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관리</u> 21. <u>구룡포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u> 22. <u>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3. <u>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u>
<p>【별표 2】 사업소의 소장·과장의 직급 (제45조 관련)</p>	<p>【별표 2】 사업소의 소장·과장의 직급 (제46조 관련)</p>

1. 개정이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대한 대응책 및 행정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그 분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장사무의 조정 (안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 국제협력팀 ⇒ 기획예산과 :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에 관한 사항
 - 해양항만팀 ⇒ 체육지원과 : 해양레포츠 시설 및 해양스포츠에 관한 사항
 - 경제노동과 ⇒ 기업유치과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관리, 공산품 단속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여성가족과 : 일본군 피해 할머니 보호 및 지원

포항시의회에서 의결한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의회 의장 이 상 구

2011년 2월 17일

포항시의회규칙 제18호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의회운영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한 포항시의회 의원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의회 의장 이 상 구

2011년 2월 17일

포항시의회규칙 제 19호

포항시의회 의원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포항시의회의원스터디그룹(이하 “스터디그룹”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 의원이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스터디 그룹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스터디그룹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스터디그룹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상 스터디그룹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등록된 스터디그룹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의장의 승인 없이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2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제5조(활동범위) ① 스타디그룹의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② 스타디그룹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예산범위 내에서 스타디그룹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스타디그룹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타디그룹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스타디그룹 활동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스타디그룹 활동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포항시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여비 및 급식비
-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강사료·전문가 자문경비·자료발간비,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의 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계획서 검토결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스타디그룹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등록 스타디그룹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 2. 연구주제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 3. 스타디그룹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 4. 스타디그룹 활동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원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스타디그룹에 통지한다.

제10조(경비의 지출)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스타디그룹에 대한 지원 경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경비의 용도와 사용금지) ① 경비를 지원받은 스타디그룹은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스타디그룹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경비를 지원받은 스타디그룹이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지원경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경비사용내역서 제출 등) 경비를 지원받은 스타디그룹은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스터디그룹 등록신청서

- 1. 스터디그룹명:
- 2. 대 표 자:
- 3. 연구목적
- 4. 구성원(명)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회 장 간 사 회 원 ※ 회장·간사 등 직위 구분이 없을 시엔 기재하지 않아도 됨				

포항시의회 의원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원스터디그룹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스터디그룹 대표

날인

포항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스터디그룹 활동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스터디그룹명		
대 표 자		
스터디그룹과제명		
주요내용 요 약		
방 법 및 세부계획	「붙임」	
예 상 경 비	총 액	
	세부내역	「붙임」
기타사항		

붙임 : 스터디그룹 활동 세부계획서 1부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스터디그룹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스터디그룹 대표

날인

포항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스터디그룹 활동경비지원신청서

스터디그룹명		
과 제 명		
연구 목적		
스터디그룹경비 신청내역	총 액	
	세부산출내역	「세부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여비, 회의비, 식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경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스터디그룹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스터디그룹 대표

날인

포항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스터디그룹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

구 분		내 용			
스터디그룹 등 록	스터디그룹명				
	대 표 자				
	등록적격여부	적 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과 제	과 제 명				
	과제적합여부	적 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경 비 지 원	총 액				
	세부내역	「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					

※ 연구과제 및 연구경비 지원 심의시에는 그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스터디그룹 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운 영 위 원 장 인

포항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스터디그룹 활동결과 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스터디그룹명	
대 표 자	
과 제 명	
연구방법	
연구목적	
내 용 요 약	
기타사항	

- 붙임 : 1. 스터디그룹 활동 결과 1부.
 2. 스터디그룹 활동경비 사용내역서 1부.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 그룹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원 스터디그룹 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스터디그룹 대표

날인

포항시의회의장 귀하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1-1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28번지의 11필지(지방하천 냉천)내에 스팀배관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2. 18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 항 시 장 박 승 호(인)

□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m ²)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읍면동	지번		일시	영구	일시	영구		
냉 천 (지방하천)	인덕동	368-28번 지의 11필	스팀배관 설치	782	170	2011.02.21 ~ 2011.04.30	허가일 로부터 영구	OCI(주) 백우석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1 - 131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공람공고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하수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2. .

-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2. 열람장소 : 포항시청 하수도과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효자 배수펌프장	포항시 남구 효곡동 340-3번지 외 19필지	펌프장 1동 유수지 1식	2011. 인가일 ~ 2015. 12. 31	포항시장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 ☎(054)270-5408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